

평가지표 14 급여제공안내	수급자는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급여계약서 부분을 제공받습니다. (3. 수급자 권리보장 / 1. 수급자권리 / 2. 수급자의 알 권리)	점수 3
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

수급자(보호자)가 기관으로부터 급여제공내용 및 범위, 직원대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 부분을 제공받았는지 평가합니다.

평가기준			평가방법
①	수급자	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	면담
②	수급자	급여계약서 부분을 받음	면담(현장)
③	수급자	급여제공범위 및 급여외행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	면담
④	수급자	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해 안내를 받음	면담

▣ 확인방법

기준①

■ 급여계약 시 급여제공내용(서비스의 종류와 내용, 서비스 제공계획, 비용 등)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는지 수급자(보호자)와 면담함

기준②

■ 급여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는지 수급자(보호자)와 면담으로 확인함. 다만, 현장에서 계약서 요건을 갖춘 유효한 계약서 부분 확인된 경우에는 Y(충족)으로 평가함

- 계약서 확인사항: 급여종류, 계약기간, 비용, 계약당사자, 서명

기준③,④

■ 급여제공범위, 제공이 불가한 급여외행위(수급자 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) 및 직원의 인권보호(직원호칭, 성폭력 예방 등)에 대하여 기관의 시설장(관리자)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수급자(보호자)와 면담함

※ 관리자: 수급자나 급여제공직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포함

- 수급자(보호자)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선, 우편물로 안내하는 것은 불인정함